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민 간 임 대 주 택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택지 내 조성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 조정, 촉진지구 공급방법 개정, 시행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등록임대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대법원의 정보 제공 및 광역지자체에게 관할 기초지자체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안 제14조제4항)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나.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안 제32조제5항제7호,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다. 등록임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제공받는 정보 추가(안 제49조제1항 제7호, 안 제49조제2항제7호)

지자체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은 등기부의 등기정보 전체(현재는 전세권 등기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규정

라. 광역지자체에 관할 시군구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여(안 제50 조제8항)

광역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 정보열람 권한 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개별 지구 특성, 지역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말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행자 변경) 법 제23조제5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시행자가 부도·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로서 입주자의 주거 및 지역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설계방안 등을 포함)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제4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
사업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개별 지구 특성, 지역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말한다.
⑤ ~ ⑦ (생략) <u><신 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시행자 변경) 법 제23조제5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시행자가 부도·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u>제18조의2</u> (생략)	<u>제18조의3</u>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 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로서 입주자의 주거 및 지역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설계방안 등을 포함)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6. (생략)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 기기록 중 전세권의 등기기록 8. (생략)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u>한 자료</u>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등기부의 등기기록 8. (현행과 같음)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 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 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 · 도지사에게 관할 시장·군수 · 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 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477